

표준하도급계약서					
계약자	원사업자	상 호 : (주)엘리스나인코리아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20 길 16 7 층(JK 타워) 대표자 : 이 경 미			
	수급사업자	상 호 : (주)비에스지파트너스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5길 21(역삼동, BSG빌딩) 대표자 : 박 철 옥			
계약내용	계 약 명	유한양행 자사쇼핑몰 구축 프로젝트			
	계 약 기 간	2022년 09월 13일부터 2023년 01월 31일까지			
	계 약 금 액	금 일억오천만원정(W150,000,000) - 부가세 별도			
	대금지불조건	구분	지급비율	지급금액	청구 일정
		선급금	40%	60,000,000	착수 후 세금계산서 발행
		중도금	30%	45,000,000	중간보고 후 발주사의 검수 승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잔 금		30%	45,000,000	최종 서면으로 검수승인 완료 (시스템오픈)후 세금계산서 발행	
※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익월 말일 이내 현금 결제(단, 발주사의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발주사의 대금지급시기에 맞추는 것으로 한다.)					
(주)엘리스나인코리아 (이하 “원사업자”라 함)과 (주)비에스지파트너스 (이하 “수급사업자”라 함)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별첨에 의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별첨 1. 계약조건 별첨 2. 과업지시서 별첨 3. 견적서 2022 년 9월 13일 원 사 업 자 (주)엘리스나인코리아 대표이사 이 경 미  수 급 사 업 자 (주)비에스지파트너스 대표이사 박 철 옥 					

계약조건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유한양행을 발주사로 하는 ERP 개발 프로젝트의 계약으로 발주사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구축분야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있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공정한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 하도급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 의)

① 이 계약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이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구축분야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의미하며, 하도급거래가 아닌 단순인력파견계약은 제외된다.

2. “과업지시서”란 본 계약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용역위탁(이하 “과업”)의 내용 및 업무의 범위, 작업장소 등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 혹은 그에 준하는 서면을 의미하며,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 역할한다. 과업지시서는 본 계약 체결시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작성되고 본 계약과 함께 전체 계약의 일부가 된다.

3. “계약의 목적물”이란 본 계약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목적물을 의미한다.

4.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 조 제 3 호의 규정에 따르며, “소프트웨어사업자”라 함은 동법 제 2 조 제 4 호의 규정에 따른다.

5.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6. “서면”이란 당사자의 서명(「전자서명법」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의미한다.

7. “납기”란 수급사업자가 본 계약에 따른 과업의 수행을 완료하여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발주사의 장소에 납품 또는 제공하여야 할 기일 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대해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요청한 날을 의미한다.

8. “수령”이란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9. “검사비용”이란 계약 목적물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검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검사장비 등의 구입 또는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10. “불가항력”이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전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독립된 계약자의 지위를 가지며 본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 4 조 (계약의 내용 및 성립)

① 본 계약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구축의 과업(하도급법 제 2 조의 “용역위탁”으로, 이는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에 해당한다)의 위탁일, 제공시기 및 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하도급법 제 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기재사항에 관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다.

② 본 계약보다 상세한 내용을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 체결할 수 있으나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부당특약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무효이다.

③ 제②항의 특약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작성 및 날인하여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이에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수락거부의사가 있을 때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③항의 서면을 거래가 끝난 날부터 3 년간 보존한다.

⑤ 원사업자가 구두로 추가적인 작업지시를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추가로 위탁받은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원사업자가 15 일 이내에 그 내용을 발주사에 통지하여, 발주사 또는 원사업자가 이에 대한 인정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의 변경이 이루어 질 경우 사전 서면합의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 5 조 (목적물의 정의 및 과업의 범위)

①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과업지시내용은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과업지시내용보다 구체성을 결여하지 아니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과업지시서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이를 공개한다. 단, 동 공개는 수급사업자의 과업내용과 관련있는 부분의 열람에 한정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는 최초 계약 체결시 과업지시서에 과업범위를 명확히 정한다. 단, 발주자측의 과업범위 미확정 등 합리적 사유로 인해 과업범위의 일부를 정하지 못할

경우, 과업범위의 일부를 특정하지 아니한 과업지시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사항이 특정되지 아니한 이유를 과업지시서에 기재한다.

제 6 조 (계약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사전 서면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합의와 관련된 서류 및 변경계약서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

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는 경우

② 제①항에 의한 계약변경은 서면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계약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서 일방은 상대방에게 변경된 계약내용의 이행책임 및 계약내용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 7 조 [과업대가의 결정 및 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본 과업수행에 대한 대금은 사양, 납기, 품질,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며, 대금 및 대금지급방식(현금/어음 등), 지급시기, 지급률(선금/중도금/잔금) 등 대금지급조건은 계약서에 명시한다.

② 원사업자는 이 계약 전문에서 정한 선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선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8 조 (발주자가 있는 계약에서의 과업대가의 결정 및 변경)

①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경우, 수급사업자는 과업대가 지급 조건을 정함에 앞서 원사업자에게 원사업자와 발주자 간 계약의 지급 조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이를 공개한다. 단, 동 공개는 열람에 한정시킬 수 있다.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과업을 위탁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제②항에 따라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 중 대금관련 부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공개한다. 단, 동 공개는 열람에 한정시킬 수 있다.

④ 제②항에 따른 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한다.

제 9 조 (대금감액 금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한 과업범위, 과업물량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않는다. 다만 원사업자가 과업범위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계약 목적물의 공급을 완료한 날부터 60 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제 10 조 (과업대가의 지급)

과업 대금의 지급일은 양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목적물 수령일(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 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의미한다. 단,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같다)로부터 60 일을 넘을 수 없다. 양 당사자간 대금지급일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 일째 되는 날을 대금지급기일로 본다.

제 11 조 (발주자가 있는 경우 과업대가 지급의 특칙)

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수급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기 전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원사업자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 및 비율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한다.

② 제①항의 선급금 지급 관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지급보증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해당 지급보증서를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통보일로부터 수급사업자의 제출일까지의 기간을 지급기한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잔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과업수행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의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⑤ 선급금은 계약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선급금 사용 완료 후 그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시 이를 반환한다.

제 12 조 (과업대가의 직접지급 요청)

제 1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 회분 이상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사업자가 수행하는 계약의 실행이 원사업자의 개입 없이 발주사를 통하여 직접 이루어 지는 경우

제 13 조 (계약이행 보증금)

① 원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이 계약 전문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현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한다.

1.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2. 국채 또는 지방채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②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경우, 제①항의 보증요율은 원사업자와 발주자 간 계약에서 정한 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급사업자가 제①항의 보증서 제출을 지연하여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이는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수급사업자의 보증서 제출을 지연시킨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대금지급 보증금)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 13 조의 계약이행 보증금을 요구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대금지급을 보증한다. 이 경우 보증방법은 제 13 조 제①항을 준용한다.

1. 용역기간이 4 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2. 용역기간이 4 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 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3. 용역기간이 4 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 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②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①항의 보증을 면제할 수 있다.

1. 용역대금이 1 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5 조의 3 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③ 발주사가 대금지급의 보증을 요청하지 않거나 원사업자는 제②항 각 호에 따른 대금지급의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제①항에 따른 대금 지급보증을 한다.

제 15 조 (작업기간의 단축)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범위 및 과업물량의 변경 없이 작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기간 단축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② 원사업자의 요구로 제①항의 작업기간의 단축이 이루어질 경우, 작업기간 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제 16 조 (납기)

구체적 납기시기는 양 당사자가 본 계약체결 시 협의하여 정하나, 이를 정하지 못할 경우 추후 과업지시서에 서면으로 명시한다.

제 17 조 (납품 또는 제공의 방법)

①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에 의한 과업의 수행을 완료한 후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납품 또는 제공하며, 동 절차는 과업지시서에 서면으로 명시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납기의 지연, 기타 납품과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원사업자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③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의 납기가 지연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발주사와 협의하여 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 18 조 【수령 및 검사】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제공한 경우(이전이 곤란한 목적물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에 의한 검사(원사업자의 의뢰에 의한 제 3 자 검사를 포함한다)가 개시된 때, 이하 같다),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이는 검사 이전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수급사업자의 과업수행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검사대상은 과업지시서 내 과업(계약변경으로 인한 최종과업을 말한다)으로 한정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을 이유로 검사를 지연 또는 거부할 수 없다.

④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 또는 수급사업자로부터의 검사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단, 발주사의 불가피한 검사 기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사의 승인을 득하는 때를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⑤ 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 원사업자는 제④항의 검사결과 통지시 반드시 불합격 사유를 명시한다.

⑥ 원사업자는 제④항과 제⑤항의 검사결과와 관련된 서류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 년간 보존한다.

⑦ 수급사업자는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합격 사유에 대해 소명하거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후 10 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⑧ 검사대상 목적물의 기술적 특수성 등 10 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협의하여 별도의 검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 19 조 【부당반품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제공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1.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공급 또는 대여한 설비 등의 품질 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사업자가 공급하는 설비 등의 공급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제 20 조 【제 3 자에 의한 검사】

- ① 원사업자는 발주처의 요구, 목적물의 기술적 전문성 등의 사유로 제 3 자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 3 자에 의한 검사는 원사업자에 의한 검사로 간주되며, 제 18 조 제③항 내지 제⑧항은 제 3 자에 의한 검사 시 준용된다.

제 21 조 【수급사업자의 협조의무】

-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목적물에 대하여 검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목적물이 포함된 원사업자의 산출물’에 대하여 검사(이하 “총괄검사”)를 받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의 검사에 대하여 신의칙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협조한다.
- ② 제①항에 의하여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과업이 발생할 경우 원사업자는 추가과업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 22 조 【불합격품의 처리】

- ① 수급사업자는 검사 결과, 불합격된 목적물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체물의 납품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필요한 조치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 내에 목적물을 인수하는 것이 포함된다. 수급사업자가 기간 내에 목적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 ② 수급사업자가 제①항의 필요조치를 취하는 것이 수급사업자가 본래의 납기를 지체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감경시키지 않는다.
- ③ 목적물이 불합격된 사유가 원사업자가 공급한 설비의 하자 등 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제 23 조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①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하기 전에 발생한 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단, 멸실 또는 훼손이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이후에 발생한 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단, 멸실 또는 훼손이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24 조 【품질보증】

①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의 전과정에 걸쳐 품질보증체제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개발된 목적물이 본 계약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설계 또는 사양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원사업자는 품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품질보증 계획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수급사업자의 품질보증 범위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과업범위로 한정되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품질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② 수급사업자는 목적물과 관련하여 주요 개발 단계 및 개발 기법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변경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목적물의 품질 수준은 양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며, 협의 절차를 과업지시서에 명시한다.

제 25 조 【하자보증】

① 목적물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과업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 년으로 한다.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해 1 년보다 짧은 기간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정할 수 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 종료 이후의 하자보수에 대해서 양 당사자는 별도의 유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의 기능변경, 사용방법개선 등 하자 이외의 사유로 인한 개선·변경사항이 발생하면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도 별도의 유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①항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목적물에 대한 원사업자의 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단,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총괄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이 확인된 날로부터 기산할 수 있다.

④ 수급사업자의 과업수행에 대한 검사 완료 후 양 당사자가 약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의 하자를 보증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원사업자에게 납부 또는 교부한다. 이 경우 하자보증금은 계약금액의 5%로 하되,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 등의 사유로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단, 그 요율은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에서 정한 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본 조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원사업자의 지시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도 수급사업자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보증 책임을 부담한다.

1. 원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한 경우

제 26 조 【지체상금】

① 수급사업자가 계약기간내에 과업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하도급 대금의 2.5/1000 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다. 단, 물품과 용역의 과업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율에 따른다.

1.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 1/1000

2. 그 외의 경우 : 1.5/1000

② 제①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과업의 특성상 분할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과업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①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과업수행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과업수행이 중단된 경우

3.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

4.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을 이행할 경우(원사업자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 일 이내에 한함)

5. 기타 수급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과업수행기간 내에 과업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과업수행기간 이후 검사 시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검사에 따른 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과업수행기간을 경과하여 과업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과업수행기간 익일부터 검사(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과업수행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 27 조 (지식재산권)

① 본 계약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귀속, 사용 등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①항의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영업적, 기술적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①항의 결과물을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 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단, 발주자가 있는 계약의 경우 원사업자가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경우(발주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해 본문을 적용한다.

③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②항의 권한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권한범위를 별도로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지식재산권을 본 계약에 의한 과업수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원사업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제 3 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동일하다.

⑤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와 제 3 자간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체적인 상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중 책임 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해당 분쟁을 처리하며,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제 28 조 (기술자료 임치)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에 따른 결과물의 유지보수 및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과업수행에 따른 ‘기술자료’를 제 3 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에 임치할 수 있다.

②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임치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해당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면 이에 응한다.

③ 제①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3. 기타 개발기술자 관련 정보, 원가산정자료 등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

④ 제①항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의 결과물의 기능 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추가 임치한다.

⑤ 제①항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임치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치를 요구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단,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 29 조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 3 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로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원사업자가 제①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동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외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 3 자를 위하여 제②항 1 호의 요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 30 조 (기술지원 및 교육)

① 수급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검사가 완료된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의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목적물의 사용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 및 교육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동 교육의 일정, 횟수, 시간 등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수급사업자의 과업수행 완료 이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③ 제②항의 교육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에 따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1. 원사업자가 요청한 기술지원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본 계약 및 과업지시서의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자원 이외의 추가 자원이 투입되는 경우
2. 원사업자가 요청한 기술지원 및 교육이 본 계약 이행에 국한되지 않고 가치있는 지식습득의 기회로 인정될 경우

제 31 조 (설비, 기기, 자료 등의 양도 및 대여)

① 원사업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품질 유지·개선 및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설비, 기기, 자료 등(이하 “설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의한 설비 등의 양도 또는 대여와 관련하여 양도가격, 임대료, 임대기간, 기타 양도 또는 대여의 구체적인 조건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이를 과업지시서에 명시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멸실 또는 훼손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단, 멸실 또는 훼손이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③항의 책임은 멸실 또는 훼손된 시점 기준 대여받은 설비 등의 시장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설비 등을 해당업무의 수행목적이외에 사용하지 않는다.

제 32 조 (현장유지 및 노무관리)

① 수급사업자는 선의의 관리자로서 수급사업자의 인력의 지도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현장 유지 의무를 다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령 기타 인력에 대한 법령상 책임을 지고 노무 관리를 한다.

③ 원사업자는 과업수행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건설물, 설비, 기계, 통로 등에 의한 안전보건상의 책임을 지며, 수급사업자의 인력은 위험·유해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이를 원사업자에게 신고한다.

④ 원사업자는 안전보건 상의 유해, 위험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신속히 조치를 취하며, 이 경우 재해예방을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인력은 협조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급사업자를 대리하여 개별 주문·지시사항을 처리하며, 과업수행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관리하는 자(이하 "현장대리인")를 선임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의 인력의 노무관리와 작업상의 지휘·명령

2. 과업수행에 관한 원사업자와의 연락 및 조정

3. 기타 본 계약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⑥ 수급사업자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함과 동시에 현장대리인의 성명 및 직위를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현장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⑦ 원사업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주문·지시 등을 현장대리인에게 행하고, 수급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행하지 아니한다.

⑧ 제⑦항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주문·지시 등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비용, 책임 등은 원사업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한다.

제 33 조 (재하도급)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과업 중 일부를 제 3 자(이하 “재수급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 34 조 (비밀유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으로 지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의 기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제 3 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경영정보 등 영업상 중요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제①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제①항의 의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한다.

제 35 조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인력채용 제한)

계약기간 중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인력 중 동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업무를 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않는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 경영상의 위기로 인력구조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6 조 (계약의 해제, 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 3 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한 경우

5. 제 5 조 제③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최초 예상했던 과업범위를 초과하는 과업이 정의되어 수급사업자의 기술력 및 인력으로 동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동 과업수행으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원사업자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작업에 상당 기간 동안 지장을 초래하게 하거나 또는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과업수행을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 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과업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③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제①항 및 제②항 각호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④ 제①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는 상대방이 해제(해지)권자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한다.

⑤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 37 조(대물변제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현금, 어음대체결제수단 또는 어음(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이며,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 38 조 (보복조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소속된 조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원사업자가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3.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4.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제 39 조 (손해배상)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 3 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40 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계약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①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분쟁 또는 기술유출 등 기술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해결은 소프트웨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분쟁조정기관 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3 조에 의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에 의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별첨 2] 과업지시서

- 발주사의 해당 프로젝트 관련한 수급사업자의 분석 단계 종료 후 발주사 및 수급사업자간 상호 합의한 과업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별도 작성합니다.

[별첨 3] 견적서

1. 견적서

- 프로젝트명 : 유한양행 자사 쇼핑몰 구축 프로젝트
- 프로젝트 기간 : 4.75개월
- 프로젝트 공수 : 10.4 M/M
- 견적금액 : 총 일억오천만 원 (단위:KRW,부가세별도)

(단위:M/M, 원)						
프로젝트명	작업구분	모듈	투입 공수	단가	금액	비고
자사쇼핑몰 구축	프로젝트 투입 인력	PM	1.00	16,000,000	16,000,000	상세 내역 참고
		SD	1.90	16,000,000	30,400,000	
		FI	1.00	16,000,000	16,000,000	
		MM	1.00	16,000,000	16,000,000	
		PO	1.10	16,000,000	17,600,000	
		ABAP	4.35	13,000,000	56,550,000	
			합계 금액		152,550,000	
			할인금액		2,550,000	
			최종 제안금액		150,000,000	

유한양행 자사 쇼핑몰 구축 프로젝트 구축 범위 입니다.

NO	기능/프로그램 명	구분
1	마일리지 사용 및 관리 기능	신규개발
2	발송 배송비 처리 및 관리 기능	신규개발
3	Mall_자재마스터 전송 (SAP -> MALL)	수정개발
4	Mall_기준판가마스터 전송 (소비자가격 : SAP -> MALL)	수정개발
5	Mall_일일정상주문처리 (MALL -> SAP)	수정개발
6	Mall_일일무상주문처리 (Mall -> SAP)	수정개발
7	Mall_일일반품주문처리 (Mall -> SAP)	수정개발
8	Mall_일일교환주문처리 (Mall -> SAP)	수정개발
9	SAP 정상출하문서 생성 및 출고 (공통 : SAP CBO)	수정개발
10	SAP 무상주문문서 생성 및 출고 (공통 : SAP CBO)	수정개발
11	SAP 반품출하문서 생성 및 출고 ((공통 : SAP CBO))	수정개발
12	SAP내 매출취소(공통 : SAP CBO)	수정개발
13	SAP내 출하취소(공통 : SAP CBO)	수정개발
14	SAP내 주문취소 (공통 : SAP CBO)	수정개발
15	MALL 재고차이 분석 REPORT (배송중 재고 + SAP재고)	수정개발
16	(오창)재고입고예정정보전송 (SAP->CJKX)	수정개발
17	(백암)센터내 재고이전전기 요청 (SAP ->CJKX)	수정개발
18	재고출고결과 수신 (CJKX->SAP)	수정개발
19	Mall_재고정보조회 (SAP->Mall)	수정개발

NO	기능/프로그램 명	구분
20	수금 관리 마스터(카드,수수료율,수금유형 등)	수정개발
21	반품 환불 처리	수정개발
22	매입내역관리(MALL&POS)	수정개발
23	MALL 매입내역 FBS_NO 연결 관리	수정개발
24	MALL 카드수금관리	수정개발
25	외상매출금 정기 반제 (고객채권 잔액 관리) Batch Job&Log	수정개발
26	MALL 반송배송비 현금입금 정산	수정개발
27	[SD2]F&B 목표대비 실적	수정개발
28	[EXIT]회원권 출고 시 코스트센터 입력	수정개발
29	Mall_재고정보조회 (SAP -> MALL)	수정개발
30	Mall_ 고객마스터 전송 (O to O)	수정개발
31	STO 생성 및 취소 프로그램 (오창)	수정개발
32	STO 생성 및 취소 프로그램 (백암센터내)	수정개발
33	재고입고결과 수신 (CJKX -> SAP)	수정개발
34	오창 WMS 출고 의뢰 및 출고 처리 수신 및 처리	수정개발
35	오창 WMS 출고의 CJ 전송 및 입고 결과 처리	수정개발